

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

1. 관련

- 가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21589(2021.7.9.)
- 나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(2021.7.23.)

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 평균 1,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**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** 하면서 감염 확산세를 꺾기 위한 방안으로 스포츠 시설에서 운동 모임 등에 대한 사적 모임 예외 적용을 중단하는 등 **보다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는 한편, 국민 불편이 큰 일부 조치는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**

<주요 변경 사항>

-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인원 모이는 경우 사적 모임 예외 미적용
- 골프장 등 실외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금지
- 전시회·박람회 시 1개 부스 내 상주인력은 PCR음성 확인을 받은 사람으로 최대 2인으로 제한, 사전예약제 운영(의무)
-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가 아닌 경우와 학술행사는 각각 참석인원 최대 50명 미만으로 제한
- 공무,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인 경우라도 숙박이 동반되는 행사는 금지
- 결혼식장, 장례식장은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적용

3. 중앙정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공공기관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동 체계의 적용을 받는 각 시설에 이를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,

-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 감염확산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, 사업장 방역실태 점검 시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, 무관용 원칙에 따라 운영중단 등 적극 처분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,
 -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해 즉시 집합금지 조치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,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,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도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적용기간: 2021. 7. 26.(월) 0시 ~ 2021. 8. 8.(일) 24시

나. 적용지역: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(강화군, 옹진군**제외), 경기도

** 강화군, 옹진군의 거리두기 단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20199(2021.6.28.)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 자체 조정·시행

다. 적용단계: 거리두기 4단계

1) 방역지침 의무화 등 대상시설(1, 2, 3그룹, 기타시설, 고위험 사업장)

○ 대상시설(35종)

- 1그룹(3종): 유흥시설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감성주점, 헌팅포차), 콜라텍·무도장, 홀덤펍·홀덤펍게임장
- 2그룹(5종): 식당·카페, 노래(코인)노래연습장, 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(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),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
- 3그룹(12종): 학원 등, 영화관·공연장, 독서실·스터디카페, 결혼식장, 장례식장, 이·미용업, 실내체육시설(비교적 중저강도 운동), 유원시설, 오락실·멀티방, 상점·마트·백화점(300㎡ 이상), 카지노(외국인 카지노 제외), PC방
- 기타시설(13종): 스포츠클럽(관람)장, 경륜장·경정장·경마장(각 국공립시설), 미술관·박물관·과학관, 실외체육시설(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), 숙박시설, 파티룸, 도서관, 키즈카페, 돌잔치전문점, 전시회·박람회, 마사지업소·안마소, 국제회의·학술행사, 종교시설
- 고위험 사업장(2종): 콜센터, 물류센터

○ 법적근거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호

○ 조치내용: 집합금지(유흥시설 등), 집합제한 및 방역지침 의무화(유흥시설 외)

붙임1: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부

붙임2: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(1~3그룹, 기타시설, 고위험 사업장)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

2) 모임·행사

○ 법적근거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호

○ 조치내용: 집합금지(모임·행사·집회), 방역지침 의무화(사적 모임)

● (집합모임·행사)금지

<금지 대상 모임·행사(예시)>

설명회, 공청회, 토론회,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, 수련회, 집회, 페스티벌·(지역)

축제, 사인회, 강연, 훈련, 대회 등

※ 결혼식, 장례식, 종교시설, 전시회박람회, 국제회의학술행사, 공연은 각각 별첨 '기본방역수칙' 의 결혼식장, 장례식장, 종교시설, 전시회·박람회, 국제회의·학술행사, 공연장과 추가적용 수칙을 적용하되 「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국제 회의가 아닌 경우와 학술행사는 각각 최대 참석인원을 50명 미만으로 제한

- 집회는 1인 시위만 가능

• (사적 모임) 사적 모임 5명 (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 3명) 이상 금지

• (시험) 수험생 간 1.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, 대기자 공간 마련, 시험관계자,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

* 기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

붙임3: 수도권 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3) 교통시설

○ 대상시설: 대중교통시설(국제항공편 제외)

○ 법적근거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호

○ 조치내용: 방역지침 의무화

※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20199(2021.6.28.)에 의한 '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' 계속 적용

4) 국공립시설

○ 소관부처·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

※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(이용)특성, 방역관리 상황,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, 국공립시설(정부청사 체력단련실 등) 탄력적 운영가능

※ 별도 기본방역수칙이 마련되어 있는 시설(카지노, 경륜·경마·경정 등)은 해당 수칙 적용

5) 사회복지시설

○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

6) 학교(등교)

○ 4단계: 원격수업 전환 유지

6) 직장근무(유연근무 등 활성화)

○ (제조업 외) 시차 출퇴근제, 점심시간 시차제, 재택근무 30% 권고

4.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, 미등록 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,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타 업종과의 방역조치 형평성 및 위험성 등을 고려,

유사업종의 방역수칙을 참고하여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바랍니다.

5. 위와 같은 방역조치의 이행을 위해,

-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,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,
 -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, 관련 단체등에 안내하며,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(행정안전부)는 중앙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부처의 이행상황 점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: 4. 기본방역수칙 1부. 끝.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장

수신자 본부각과장, 중앙행정기관장, 중앙방역대책본부장, 서울특별시장, 인천광역시장, 경기도지사



주무관	홍명기	행정사무관	박은경	생활방역팀장	심은혜	사회전략반장	손영래
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 본부 총괄책임 관	이기일	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 본부 부분부장	강도태	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-19중 앙사고수습본 부 부분장	권덕철		

협조자

시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23321 접수 학생건강정책과-6386 (2021. 7. 26.)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7층 / <http://ncov.mohw.go.kr>

전화번호 044-202-1725 팩스번호 044-202-0000 / mk7069@korea.kr / 비공개(5)